

육아정책 소식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3개 부처가 7월 3일(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본 점검은 급식인원 50인 이상 시설과 50인 미만 시설로 나누어 진행될 계획이다. 5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00여 개는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위생부서가 보존식 보관유무,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예정이며, 50인 미만 유치원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은 복지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육부서가 개인 위생, 시설·설비, 식재료 및 보존식 관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총 224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가 참여하여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관계부처는 T/F를 구성하여 점검 결과 분석 후 급식 위생 개선 대책을 강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임신부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0~2세), 유아(3~5세) 간 일관성 있는 교육 제공과 어린이집 설치 시설물의 유희공간을 보육서비스 제공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에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영양사 배치, 보존식 관리 등 급간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21년 시행)”이라고 밝혔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 내용 〉

어린이집 보육 우선제공 대상 범위 확대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을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로 확대
어린이집 내 유희공간 활용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희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 아동센터로 이용 가능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 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정
유통기한 만료 식품 관리	• 급·간식 위생관리를 위한 강화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 없음

교육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인정하는 시행령 신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월 11일(화) 유치원 휴업과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의 교외체험 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신설하고,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지연되면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방학기간을 일치시키기 어려웠다. 본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추후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서 유치원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2조 제2항 신설(2020.6.23.)

** 「유아교육법」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 2학기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월 27일(목)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과 관련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즉시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단위 학교 돌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2학기 돌봄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와 부족분은 없는지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연계한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추후 지속 대응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학기 초등돌봄 추후 지속 대응 방안 〉

대기자 관리를 통한 추가수요 적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우선 수용하고 저학년 맞벌이 가정 우선 고려 • 교육청 차원의 수요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
단위 학교 수용능력 확대 및 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등 자체 인력풀 활용 •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 확보 및 재배치 • 실별 밀집도 고려, 최소인원으로 분산 배치(실당 10명 내외) • 돌봄 참여 학생에게 학교 급식 제공
시도교육청별 돌봄 충분한 확보 및 집행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예산 집행 현황을 상시 점검, 이·불용액 발생 사업예산 현안에 사용 독려 • 시도교육청: 기존 돌봄예산 우선 활용, 추경 및 예비비 등 가용예산 추가 확보, 돌봄 예산 점검

여성가족부, 코로나19위기 극복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이정옥 장관)는 9월 4일(금)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지원 확대 대상은 9월 2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며, 해당되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수업 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먼저, 휴원·원격수업을 하게 될 경우 평시 정부 지원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라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가~라)의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40~90%를 지원한다. 이용시간과 요금 지원 확대로 이용자 부담이 평균 37.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한편,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9월 9일(수) 고시하였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 휴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다.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

-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발표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8월 27일(목)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우리나라의 아동 삶의 만족도가 OECD와 비교할 때 낮고**, ▲아동기 낮은 행복감은 성인기까지의 삶, 나아가 사회·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19년 5월에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천명한 「포용 국가 아동정책」의 비전을 계승·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4대 추진 전략, 9개 중점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중심’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아동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동 권리 실현·보호를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동이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주요 내용 〉

비전	아동이 행복한 나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1.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②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2.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④ 아동 신체와 마음건강 관리 강화 ⑤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3.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 ⑦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4.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⑧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⑨ 재난 상황에 대응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심의하는 아동정책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 아동 삶의 만족도 평균 6.10(’13)→6.57(’18) 상승(OECD 평균 7.6점 / OECD 중 최하위권)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하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이정옥 장관)는 8월 26일(수)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 체계를 체계화하고 있다. 취학 전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영유아의 발달과정임을 감안하여, '성폭행/성폭력' 등의 용어 대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제시했다. 또한,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였다. 대책 내용에 포함된 영유아의 행동 수준별, 기관별 대응요령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설명서(매뉴얼)」(보건복지부, 교육부)에 담길 예정이며, 성인지 교육 교재(여성가족부)도 제작될 예정이다.